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0. 5 선고 2021가단2020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5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은 2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’은 ‘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’으로 본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3. 일부 기각

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,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.

판사 편병호

별지